

# 「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년 9월 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2년 9월 15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7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2년 9월 15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기획실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『지방자치법』의 전부개정(‘21. 1. 13. 시행)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평창군수 직의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##### 1)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(안 제2조, 제3조)

- 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범위에서 당선인이 결정
- 나)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존속

- 다)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위촉 가능
- 라) 위원장은 당선인 보좌, 위원회 업무 총괄, 직원 지휘·감독

## 2) 위원회 회의(안 제4조)

- 가)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 소집
- 나)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시 회의 시작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의결

## 3) 위원회의 직원,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(안 제5조, 제6조)

- 가)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군 소속 직원 파견 및 예산범위 내 지원
  - \* 사무실, 비품,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
- 나) 자료·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 가능

## 4) 위원회 수당지급 및 활동 결과보고(안 제7조, 제8조)

- 1) 「평창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등 규정에 따라 수당,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
- 2)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, 30일 이내 공개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조문에 의거하여,

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
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은,

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

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

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

위원회의 직원,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

위원회 수당지급 및 활동 결과보고에 관련한 내용을 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,

「지방자치법」, 「평창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등

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상위법 위임사항을 규정한 바,

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됩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5. 토론요지: 없음**

**6. 심사결과: 원안의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**

붙임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